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79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성일종・나경원・최보윤

이종배 • 박덕흠 • 최수진

고동진 • 윤상현 • 이인선

송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재 사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은 그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임.

이에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는 관련 직무의 수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출입국자료의 제공 요청)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병역의무자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제2항·제6항 및 제6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또는 제70조제4항·제7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 및 그 취소를 위하여 병역의무자 가족의 출입국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 2.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
- 3. 제65조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 4.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허가 및 그 취소
- 5.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 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목 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제80조의3(출입국자료의 제공 요청)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병역의무자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다만, 제65조제2항ㆍ제6항 및 제6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또는 제70조제4항ㆍ제7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ㆍ기간연장허가 및 그 취소를 위하여 병역의무자 가족의 출입국자료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1. 제60조에 따른 병역관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2.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
3. 제65조 또는 제65조의2에 따 른 병역처분 변경 등

- 4.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허가 및 그 취소
- 5.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